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개선〉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14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태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12.
3. 회 부 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등의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를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형식적으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의 연동을 요청하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⑦ (생략) <u><신설></u>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제4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용된다는 뜻과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⑨ 원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u>
<u>⑧ (생략)</u>	<u>⑩ (현행 제8항과 같음)</u>

현행	개정안
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 ----- ----- ----- -----.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u>제12항</u> ,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1. ----- ----- -- <u>제14항</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8항).

□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¹⁾

- 다만,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그 합의를 중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탈법행위로서 규율하고 있음.²⁾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미연동 합의(65.4%)를, 수급사업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40.6%)³⁾을 응답함.

- 나아가 미연동 합의를 한 사유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1)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사업자와의 미연동 합의로 인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7.6%임.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제공을 원치 않아서’를 가장 높은 비율로 택하였음.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 사유>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미연동 합의	65.4%	27.6%
1억원 이하 소액계약	32.5%	16.5%
90일 이하 단기계약	24.3%	13.3%
제도 이해부족	12.3%	40.6%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2.3%	4.0%
기타	7.3%	9.8%

※ 중복응답 가능

※ 자료: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 사유>

미연동 합의 사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제공을 원치 않아서	47.8%	44.5%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원치 않아서	30.0%	15.8%
연동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18.3%	31.9%
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충분히 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8.4%	13.8%
기타	39.0%	11.7%

※ 중복응답 가능

※ 자료: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서면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나아가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용되도록 간주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연동제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원사업자와의 지위 불균형 등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임.

- 건설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제한적⁴⁾이고, 개정안이 계약 당시에는 거래상 지위 불균형으로 수급사업자가 미연동에 합의하는 경우를 시정하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하며, 하도급대금 연동 간주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사후 연동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회피 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실효적 수단으로 평가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4)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조업은 21.4%, 건설업은 13.1%임.

- 첫째,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사후 요청만으로도 하도급 계약에서 연동제를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는 개정안이 수급사업자의 일방적 요청만으로 계약 상호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자유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간주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원사업자에게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바 과도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대한건설협회는 만약 개정안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사후 적용은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요청만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의 실익 측면에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의견은 당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거래상 지위불균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에 합의하였다면 이후에 다시 연동제 적용을 요청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 미연동합의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이미 현행법상 연동제 탈법행위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함.

- 셋째, 개정안은 사후적 일방 통보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간주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변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본질로 하는데,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부작위라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 변경의 효력을 강제로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

아울러 연동 대상 원재료의 범위,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조정요건 및 반영비율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핵심 요소⁵⁾에 관한 구체적 합의 없이 연동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확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마지막으로 풍선효과의 발생가능성임.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사후에 언제든지 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상황에 직면하므로 리스크 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는 원사업자가 사후에 연동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비교적 영세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만들고, 사후 연동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비용을 고려하여 단가를 낮게 책정하려는 유인을 갖게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문 의 처
02)6788-5109